

생활용품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처분 공고

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0조(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)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번호	인증번호	제조사명	제조국	신고업체명	신고업체주소	제품명	모델명	행정조치일자	행정조치사유
1	B403R5030-18002	ZHEJIANG OKAI VEHICLE CO., LTD.	중국	주식회사 에스대현	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 308, 2층(하산곡동)	전기자전거	e-runbike02	2020.05.27	효력상실처분 (법 제20조 제1항)